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9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4.

발 의 자 : 김영민 · 진선미 · 박원서 ·
방민수 · 황주영 · 김남현 ·
신무연 · 이원국 · 서회원 ·
양평호 · 제갑섭 · 임인택 ·
박희자 · 김연후 · 한경혜 ·
정미옥 의원 (16명)

1. 개정이유

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(2018.12. 5.)에서 심의 의결된 제8대 의원의 4개년도(2019 ~ 2022년)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각각 신설(안 별표3)
- 2019년도 월정수당 :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(2.6%) 적용 인상
 - 2020년도 월정수당 :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(1.8%) 적용 인상
 - 2021년도 월정수당 :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% 적용 인상
 - 2022년도 월정수당 :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% 적용 인상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월정수당의 지급기준(제4조 관련)

2019년도	2,658,530원/월
2020년도	2,706,380원/월
2021년도	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적용 인상
2022년도	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적용 인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
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월정수당의 지급기준(제4조관련)</u></p>	<p>[별표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월정수당의 지급기준(제4조관련)</u></p>
연 도 별	월정수당
<u>2016년도</u>	<u>2,430,620원/월</u>
<u>2017년도</u>	<u>2,503,540원/월</u>
<u>2018년도</u>	<u>2,591,160원/월</u>
연 도 별	월정수당
<u>2019년도</u>	<u>2,658,530원/월</u>
<u>2020년도</u>	<u>2,706,380원/월</u>
<u>2021년도</u>	<u>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 적용 인상</u>
<u>2022년도</u>	<u>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 적용 인상</u>